

2026년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8급,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법무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8월 20일
법무부 장관

1 임용예정 인원(2개 직급, 7개 분야, 총 128명)

지원 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채용 기간	근무예정지
수사B	출입국관리서기	20명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전국 출입국 관서 ※ 연고지 고려 대상 아님
AI·빅데이터A	출입국관리서기	10명		
체류A	출입국관리서기보	35명		
무도A	출입국관리서기보	33명		
외국어A (영어)	출입국관리서기보	10명		
외국어B (중국어)	출입국관리서기보	15명		
외국어C (러시아어)	출입국관리서기보	5명		

※ 하나의 지원코드만 지원 가능(복수 코드 중복 지원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2 임용예정 직무

지원 코드	채용 분야	임용예정 직급	담당 업무 ※ 임용 후 부서 사정에 따라 직무내용 변동 가능
수사B	수사·정보	출입국관리 서기(8급)	○ 대테러 특이 동향 파악, 테러 위험 국가 국민에 대한 밀착 감시 등 동향조사 활동 및 정보 수집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조사·단속 ○ 그 밖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관한 사항 등
AI·빅데이터A	AI·빅데이터		○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 시스템 개발 및 개선 ○ 출입국관리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사업 수행 ○ 출입국관리 분야 인공지능(AI) 연계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딥러닝 활용 ○ 그 밖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관한 사항 등
체류A	체류·사증·난민 이민통합	출입국관리 서기보(9급)	○ 외국인 체류자격·사증발급인증서 심사, 영주·국적 관리 및 관련 행정 절차 ○ 난민 심사·국가정세분석 및 사회통합·동포 정책 수립 등 ○ 그 밖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관한 사항 등
무도A	무도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단속 ○ 외국인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관한 사항 등
외국어A (영어)	영어		○ 외국인 출입국·체류 업무 관련 통번역 지원 ○ 출입국사범 조사·신문, 보호외국인 면담 및 난민 심사 관련 통번역 지원 ○ 그 밖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관한 사항 등
외국어B (중국어)	중국어		
외국어C (러시아어)	러시아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단 학위는 임용 예정일 기준]

채용 분야	직위별 요건 (각 분야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응시요건 참조)
수사	경력 ○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 경력) ※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공무원 경력도 해당
AI 빅데이터	학위 또는 경력 ① 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학위) ②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 경력) ※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공무원 경력도 해당 ③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민간 경력) ※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은 합산 불가

체류·사증·난민·이민통합	경력 ①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 경력) ※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공무원 경력도 해당 ②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민간 경력) ※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은 합산 불가
무도	자격증 또는 경력 ① 태권도 ② 유도 ③ 검도 중 단일 종목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④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해당부대의 고유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수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외국어	외국어 우수자 ○ 별도 요건 없음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 관련 붙임6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면접시험 예정일 : 11.9.~11.(분야별 일정 확인 필수) / 임용 예정일 : 12.21.**
- 응시자는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을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며,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응시자가 선택한 요건에 따라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분야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분야(붙임2 임용예정직위별 직무기술서 필독)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 ①근무 기간(연·월·일까지 기재, 휴직 기간 기재, 근무 기간 중 시간제 근무 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근무 기간의 주당 근무시간 기재) ②**상근 여부**(주당 근무시간) ③**상세 담당 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 내용이 모호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사기록 카드·업무분장 내역 등을 첨부하여 입증 필요) ④**대표자 직인** ⑤**발급자**(인사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및 E-MAIL) 명시,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하며,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6.08.20.)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응시자는 5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시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을 합산할 수 없음
※ 예) ‘23.08.20.부터 ‘26.08.20.까지 “경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

※ **인정되지 않는 경력** : 휴직 기간, 군 경력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단, 무도 분야는 의무복무 기간 인정), 대학 경력의 경우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경력은 포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제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원 → ①,②,③,④ 모두 제출해야 함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은 “제출서류 안내” 확인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학위취득(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취득 증명서(졸업증명서)’를 임용예정일(‘26.12.21.)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학위취득 증명서(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 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 포함)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하지 않음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6. 9. 4.) 기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은 선발단위별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무도·외국어 제외), 가산점은 선발단위별 서류전형, 필기시험(무도·외국어), 실기시험(무도) 각 단계에서 적용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학위는 우대하지 않음**

※ 단, **체류A 분야 해외근무 경력의 경우** 응시자격 또는 우대요건으로 인정받은 경력 중 해외근무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우대

○ 우대요건

-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상이하므로 붙임2 '임용예정직위별 직무기술서 내 우대요건' 확인
- **선발단위별 우대요건 점수 배점**은 붙임3 '임용예정직위별 서류전형 세부 기준' 확인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가능,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 또는 학위 요건 응시자의 관련 직무분야 근무 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미경과 시 경력 인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해외근무 경력의 경우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경력에 해당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 ※ 이외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의 "경력의 범위" 준용
- **[학위]**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 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격증이라도 주관처를 통해 공식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증명되는 경우 인정
- **[어학]** '24.09.05. 이후 실시된 어학 시험 중 '26.09.04.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에 등록된 성적**(영어·중국어로 한함)
 - ※ **해외에서 응시한 어학 성적**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어학성적 사전등록"에 **등록·검증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어학성적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6.09.04.까지 발표된 성적 중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해당 시행사에서 정한 2년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국내 성적'에 한해 인정(미등록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 가산점

- **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가점적용비율을 직접 확인하여 원서접수 시 둘 중 하나를 선택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⑦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 **(의사상자 가점)** 10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되며,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아래 의사상자는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1. 만점의 5% 가산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2. 만점의 3% 가산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응시자가 확인

5 시험 방법

수사B, AI·빅데이터A, 체류A

가. 서류전형

- 공통 요건 및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 능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 (성적 순위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무도A

가. 서류전형

- 공통 요건 및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필기시험(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과목 : 행정법 총론, 영어 / 총 50문항, 200점 만점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점 수	비 고
1차	행정법 총론	25	4	100	객관식 선택형(4지) ※ 병합실시(60분)
2차	영어	25	4	100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과적률 필기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단,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다. 실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등 적격성 평가
- － (평가종목) 상대약력,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10미터 왕복달리기, 체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5종목)
- － (합격자 결정) ‘붙임4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20% 범위에서 시험성과적률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단,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실기시험 합격자로 함
- ※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고 실격 또는 기권한 경우 불합격 처리
- － (도핑 검사)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붙임5 안내]

라.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 (성적 순위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가. 서류전형

- 공통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시험과목 : 행정법 총론, 해당 외국어 / 총 50문항, 200점 만점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배 점	점 수	비 고
1차	행정법 총론	25	4	100	객관식 선택형(4지) ※ 병합실시(60분)
2차	해당 외국어	25	4	100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과파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단,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 등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직무 능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경우

- (성적 순위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시험 방법	지원 분야	시험일정 공고	시험 일자	장소	합격자발표
채용공고	전 분야	8. 20.(목) ~ 9. 4.(금)			
원서접수		8. 27.(목) ~ 9. 4.(금) 등기접수만 가능 ※ 분야별 중복접수 불가, 접수 마감일 빠른등기 우체국 소인분까지			
↓					
서류전형	전 분야	-	-	-	9. 30.(수)
↓					
필기시험	무도, 외국어	9. 30.(수)	10. 10.(토)	추후 공지	10. 22.(목)
↓					
실기시험	무도	10. 22.(목)	11. 3.(화)	추후 공지	11. 5.(목)
↓					
면접시험	A·빅데이터 외국어	10. 22.(목)	11. 9.(월)	추후 공지	11. 27.(금)
	체류		11. 10.(화)		
	수사, 무도		11. 11.(수)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및 나라일터에 공지
- 서류 전형 이후 단계별(필기·실기·면접) 시험일정 공고일에 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을 공고하며, 각 단계별 시험 대상자에게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 12. 21.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 호봉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호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호봉의 급여 지급

8 안내 및 참고사항

- **각기 다른 분야에 중복하여 지원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 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18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수사B	수사·정보	출입국관리서기	20명	전국 출입국 관서

주요 업무	○ 대테러 특이 동향 파악, 테러 위험 국가 국민에 대한 밀착 감시 등 동향 조사 활동 및 정보 수집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조사·단속 - 특별사법경찰리의 업무 수행, 디지털 포렌식 업무 ○ 그 밖의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사항 등
-------	--

필요 지식(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공동체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 (직무 역량) - 형사소송법 등 수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이해 - 출입국사범 수사 실무를 위한 포렌식, 외국어 능력 등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의 직접 수사, 피의자 신문, 강제수사(영장 신청 등) 또는 관련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실무 경력 ▲ 방첩·안보(대공) 범죄, 외사 업무 실무 경력 ※ 8급 이상 상당 경력으로 관련 부서 내 행정 지원 업무 등은 불인정, 상세 경력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본문 “응시자격 요건 고려사항” 중 “경력의 범위” 반드시 확인 후 재직(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등 제출
	경력 ○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인 사람(공무원 경력) ※ 관련 직무 분야의 해당 계급 상당 이상 경력으로,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공무원 경력도 해당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우대)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이상(주관: 한국포렌식학회, 유효기간 무관) ○ 외국어(영어, 중국어) 능력 우수자(점수별 차등 우대)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선발예정 인원의 1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AI·빅데이터A	AI·빅데이터	출입국관리서기	10명	전국 출입국 관서

주요 업무	○ 인공지능(AI) 기반 출입국관리 시스템 개발 및 개선 ○ 출입국관리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관련 사업 수행 ○ 출입국관리 분야 인공지능(AI) 연계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딥러닝 활용 ○ 그 밖의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사항 등
-------	--

필요 지식(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공동체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 (직무 역량) - AI·빅데이터 분석·컨설팅을 위한 AI 모델링 관련 알고리즘, LLM, 파이썬, 리눅스, R, 하둡, 스파크 등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 분석모델링 결과에 대한 수리적 및 사회 과학적 결과 해석 능력
-----------	---

응시 자 격 요 건	①~③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반드시 택 1)	
	[관련전공] 데이터사이언스,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관련분야] AI모델 개발, AI서비스 발굴,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AI·데이터 관리 등 ※ 본문 “응시자격 요건 고려사항” 중 “경력의 범위” 반드시 확인 후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학위	① 관련 직무 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
	경력	②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나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 경력) ※ 관련 직무 분야의 해당 계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으로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공무원 경력도 해당 ③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나 3년 이상인 사람(민간 경력) ※ 의무복무 및 청년인턴 경력 불인정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우대) ○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SQL 전문가(SQL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ADsP), SQL 개발자(SQLD), AICE(Associate) ※ 난이도별 차등 우대, 유효기간 무관 ○ 외국어(영어, 중국어) 능력 우수자(점수별 차등 우대) ○ 관련 직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응시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하지 않음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선발예정 인원의 1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 “응시자격요건”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학위는 임용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체류A	체류·사증·난민·이민통합	출입국관리서기보	35명	전국 출입국 관서

주요 업무	○ 외국인 체류자격·사증발급인증서 심사, 영주·국적 관리 및 관련 행정 절차 ○ 난민 심사·국가정세분석 및 사회통합·동포 정책 수립 등 ○ 그 밖의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사항 등
-------	---

필요 지식(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공동체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 (직무 역량)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이해 - 체류·사증·난민·이민통합 등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지식 - 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지식 - 체류·사증·난민·이민통합 업무를 위한 외국어 구사 등 실무 수행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①~②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반드시 택 1)	
	[관련분야]	▲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체류허가·난민인정 심사 업무(심사를 위한 지원 및 상담 업무 포함하나 심사 신청을 위한 업무는 제외) ▲ 외국인 유학생 집단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심사 신청 업무 ▲ 이민통합을 위한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직접 운영 실무 경력(한국어 강의 등 경력 제외)
	[관련전공]	법학, 행정학, 이민정책학, 다문화정책, 난민정책 등 ※ 기관 내 행정 지원 업무 등은 불인정, 근무 기관(기업) 내 근무 부서에서 담당할 상세 경력 증빙자료 제출 필수(담당한 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본문 “응시자격 요건 고려사항” 중 “경력의 범위” 반드시 확인 후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①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업무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나 3년 이상인 사람(공무원 경력) ※ 관련 직무 분야의 해당 계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으로 임기제시간선택제 등 공무원 경력도 해당 ②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나 3년 이상인 사람(민간 경력) ※ 의무복무 경력 불인정, 9급 채용이므로 청년인턴 경력은 상당경력으로 인정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우대) ○ 외국어(영어, 중국어) 능력 우수자(점수별 차등 우대) ○ 해외 근무 경력(응시자격요건에 해외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포함된 경우) ○ 관련 직무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선발예정 인원의 1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무도A	무도	출입국관리서기보	33명	전국 출입국 관서

주요 업무	○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조사·단속 ○ 외국인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사항 등
-------	---

필요 지식(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공동체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 (직무 역량)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이해 - 체류·사증·난민·사범 등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지식 - 출입국 사범 처리 업무를 위한 외국어 구사 등 실무 수행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①~④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반드시 택 1)	
	자격증	①태권도 ②유도 ③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단일 종목으로 한함) ※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경력	④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3년 이상 해당부대의 고유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 특전사, 신속대응여단(구,특공여단), 특공연대, 강습대대, 제1산악여단(구,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 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 항공특수통제사(구,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수임무소대(반),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구,수색대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구,군사경찰특임대) ※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으나 행정·보급·취사·차량운전 등 지원보직에서 근무한 경력은 해당부대의 고유업무 근무경력에서 제외하여, 담당 업무에 대한 상세 경력 증빙자료 제출 필수(담당한 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본문 “응시자격 요건 고려사항” 중 “경력의 범위” 반드시 확인 후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선발예정 인원의 1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외국어A (영어)	영어 능통자	출입국관리서기보	10명	전국 출입국 관서
외국어B (중국어)	중국어 능통자		15명	
외국어C (러시아어)	러시아어 능통자		5명	

주요 업무	○ 외국인 출입국·체류 업무 관련 통번역 지원 ○ 출입국사범 조사·신문 보호외국인 면담 및 난민 심사 관련 통번역 지원 ○ 그 밖의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사항 등
-------	--

필요 지식(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 공동체 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 (직무 역량)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이해 - 체류·사증·난민·사범 등 출입국관리 업무에 대한 지식 - 출입국 심사 및 선박 검색을 위한 외국어 구사 등 실무 수행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영어·중국어·러시아어 중 한가지 언어를 선택하여 응시	
	영어	○ 별도 응시 요건 없음
	중국어	
	러시아어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선발예정 인원의 1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 의사상자 가산점은 영어, 중국어 분야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 3

서류전형 세부 기준 (수사B)

평정 요소		배점	채점 기준						비고	
발 전 가 능 성 (40)	자기 소개서 평가	20점	○ 지원 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 충실성 등						지원 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충실성 등 (정성지표)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	20점	○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정성지표)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관련분야 직무경력	30점	근무 경력	5년 이상	4년~ 5년 미만	3년~ 4년 미만	2년~ 3년 미만	1년~ 2년 미만	1년 미만	직무경력내용의 충실성과 적절성 (정량지표)
			점수	30	25	20	15	10	0	
우 대 요 건 (60)	어학능력 검정시험	10점	중국어	영어						외국어 능력 시험 점수로 평가 (정량지표)
			신HSK	외국어대 어학검정 (FLEX)	G-TELP (LEVEL 2)	TOEFL PBT/IBT	TOEIC	TEPS (*18.5.12. 이후)	점수	
			5급 210점 이상	800점 이상	88점 이상	590점 이상 / 97점 이상	870점 이상	452점 이상	10	
			5급 180점 이상	700점 ~799점	87점 ~77점	567점~599점 / 86점~96점	790점 ~865점	385점 ~451점	8	
			4급 210점 이상	598점 ~699점	76점 ~65점	530점~566점 / 71점~85점	700점 ~785점	340점 ~384점	6	
			4급 180점 이상	457점 ~597점	64점 ~44점	470점~529점 /52점~70점	550점 ~695점	241점 ~339점	4	
			※ 검정시험별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 유리한 점수 한가지만 인정							
	자격증	20점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이상 ※ 한국포렌식학회 주관, 유효기간 무관						직무의 전문성 (정량지표)	
가산 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취업지원 대상자(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 의사상자 등(선발예정 인원의 1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또는 3%							
합계		110점							배점+가산	

붙임 3-1

서류전형 세부 기준 (빅데이터A)

평정 요소		배점	채점 기준						비고																																								
발 전 가 능 성 (40)	자기 소개서 평가	20점	○ 지원 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 충실성 등						지원 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충실성 등 (정성지표)																																								
	<table><tr><th>평가등급</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tr><td>점수</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	20점	○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정성지표)																																								
<table><tr><th>평가등급</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tr><td>점수</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우 대 요 건 (60)	관련분야 직무경력	30점	<table><tr><th>근무 경력</th><th>5년 이상</th><th>4년~ 5년 미만</th><th>3년~ 4년 미만</th><th>2년~ 3년 미만</th><th>1년~ 2년 미만</th><th>1년 미만</th></tr><tr><td>점수</td><td>30</td><td>25</td><td>20</td><td>15</td><td>10</td><td>0</td></tr></table>						근무 경력	5년 이상	4년~ 5년 미만	3년~ 4년 미만	2년~ 3년 미만	1년~ 2년 미만	1년 미만	점수	30	25	20	15	10	0	직무경력내용의 충실성과 적절성 (정량지표)																										
	근무 경력	5년 이상	4년~ 5년 미만	3년~ 4년 미만	2년~ 3년 미만	1년~ 2년 미만	1년 미만																																										
	점수	30	25	20	15	10	0																																										
어학능력 검정시험	10점	<table><tr><th>중국어</th><th colspan="6">영어</th></tr><tr><th>신HSK</th><th>외국어대 어학검정 (FLEX)</th><th>G-TELP (LEVEL 2)</th><th>TOEFL PBT/IBT</th><th>TOEIC</th><th>TEPS (*18.5.12. 이후)</th><th>점수</th></tr><tr><td>5급 210점 이상</td><td>800점 이상</td><td>88점 이상</td><td>590점 이상 / 97점 이상</td><td>870점 이상</td><td>452점 이상</td><td>10</td></tr><tr><td>5급 180점 이상</td><td>700점 -799점</td><td>87점 -77점</td><td>567점-599점 / 86점-96점</td><td>790점 -865점</td><td>385점 -451점</td><td>8</td></tr><tr><td>4급 210점 이상</td><td>598점 -699점</td><td>76점 -65점</td><td>530점-566점 / 71점-86점</td><td>700점 -785점</td><td>340점 -384점</td><td>6</td></tr><tr><td>4급 180점 이상</td><td>457점 -597점</td><td>64점 -44점</td><td>470점-529점 /52점-70점</td><td>550점 -695점</td><td>241점 -339점</td><td>4</td></tr></table> ※ 검정시험별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 유리한 점수 한가지만 인정						중국어	영어						신HSK	외국어대 어학검정 (FLEX)	G-TELP (LEVEL 2)	TOEFL PBT/IBT	TOEIC	TEPS (*18.5.12. 이후)	점수	5급 210점 이상	800점 이상	88점 이상	590점 이상 / 97점 이상	870점 이상	452점 이상	10	5급 180점 이상	700점 -799점	87점 -77점	567점-599점 / 86점-96점	790점 -865점	385점 -451점	8	4급 210점 이상	598점 -699점	76점 -65점	530점-566점 / 71점-86점	700점 -785점	340점 -384점	6	4급 180점 이상	457점 -597점	64점 -44점	470점-529점 /52점-70점	550점 -695점	241점 -339점	4
		중국어	영어																																														
신HSK	외국어대 어학검정 (FLEX)	G-TELP (LEVEL 2)	TOEFL PBT/IBT	TOEIC	TEPS (*18.5.12. 이후)	점수																																											
5급 210점 이상	800점 이상	88점 이상	590점 이상 / 97점 이상	870점 이상	452점 이상	10																																											
5급 180점 이상	700점 -799점	87점 -77점	567점-599점 / 86점-96점	790점 -865점	385점 -451점	8																																											
4급 210점 이상	598점 -699점	76점 -65점	530점-566점 / 71점-86점	700점 -785점	340점 -384점	6																																											
4급 180점 이상	457점 -597점	64점 -44점	470점-529점 /52점-70점	550점 -695점	241점 -339점	4																																											
자격증	10점	<table><tr><th colspan="6">자격 시험명</th><th>점수</th></tr><tr><td colspan="6">-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SQL 전문가(SQLP)</td><td>10</td></tr><tr><td colspan="6">-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SQL 개발자(SQLD), **AICE(Associate)</td><td>5</td></tr></table>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KT&한국경제신문 공동 주관 ※ 유효기간 무관, 최대 10점까지 복수 인정						자격 시험명						점수	-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SQL 전문가(SQLP)						10	-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SQL 개발자(SQLD), **AICE(Associate)						5																					
자격 시험명						점수																																											
- *빅데이터분석기사, *데이터분석전문가(ADP), - *SQL 전문가(SQLP)						10																																											
-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 - *SQL 개발자(SQLD), **AICE(Associate)						5																																											
	직무분야 학위	10점	○ 직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응시요건으로 활용된 학위는 우대하지 않으며, 석·박사 학위 구분 없이 단일 점수 부여						직무의 전문성 (정량지표)																																								
가산 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취업지원 대상자(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 의사상자 등(선발예정 인원의 1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또는 3%																																														
합계		110점							배점+가산																																								

붙임 3-2 서류전형 세부 기준 (채류A)

평정 요소		배점	채점 기준						비고																																										
발 전 가 능 성 (40)	자기 소개서 평가	20점	○ 지원 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 충실성 등						지원 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충실성 등 (정성지표)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직무수행 계획서 평가	20점	○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						담당 예정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수행계획 내용의 충실성과 적실성 (정성지표)																																										
	평가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관련분야 직무경력	20점	<table><tr><td>근무 경력</td><td>4년 이상</td><td>3년 ~ 4년 미만</td><td>2년 ~ 3년 미만</td><td>1년 ~ 2년 미만</td><td>1년 미만</td></tr><tr><td>점수</td><td>20</td><td>15</td><td>10</td><td>5</td><td>0</td></tr></table>						근무 경력	4년 이상	3년 ~ 4년 미만	2년 ~ 3년 미만	1년 ~ 2년 미만	1년 미만	점수	20	15	10	5	0	직무경력내용의 충실성과 적절성 (정량지표)																														
	근무 경력	4년 이상	3년 ~ 4년 미만	2년 ~ 3년 미만	1년 ~ 2년 미만	1년 미만																																													
점수	20	15	10	5	0																																														
우 대 요 건 (60)	어학능력 검정시험	20점	<table><tr><td>중국어</td><td colspan="6">영어</td></tr><tr><td>신HSK</td><td>외국어대 어학검정 (FLEX)</td><td>G-TELP (LEVEL 2)</td><td>TOEFL PBT/IBT</td><td>TOEIC</td><td>TEPS (*18.5.12. 이후)</td><td>점수</td></tr><tr><td>5급 210점 이상</td><td>800점 이상</td><td>88점 이상</td><td>590점 이상 / 97점 이상</td><td>870점 이상</td><td>452점 이상</td><td>20</td></tr><tr><td>5급 180점 이상</td><td>700점 -799점</td><td>87점 -77점</td><td>567점-588점/ 86점-96점</td><td>790점 -865점</td><td>385점 -451점</td><td>16</td></tr><tr><td>4급 210점 이상</td><td>598점 -699점</td><td>76점 -65점</td><td>530점-566점/ 71점-85점</td><td>700점 -785점</td><td>340점 -384점</td><td>12</td></tr><tr><td>4급 180점 이상</td><td>457점 -597점</td><td>64점 -44점</td><td>470점-529점 /52점-70점</td><td>550점 -695점</td><td>241점 -339점</td><td>8</td></tr></table> ※ 검정시험별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 유리한 점수 한가지만 인정						중국어	영어						신HSK	외국어대 어학검정 (FLEX)	G-TELP (LEVEL 2)	TOEFL PBT/IBT	TOEIC	TEPS (*18.5.12. 이후)	점수	5급 210점 이상	800점 이상	88점 이상	590점 이상 / 97점 이상	870점 이상	452점 이상	20	5급 180점 이상	700점 -799점	87점 -77점	567점-588점/ 86점-96점	790점 -865점	385점 -451점	16	4급 210점 이상	598점 -699점	76점 -65점	530점-566점/ 71점-85점	700점 -785점	340점 -384점	12	4급 180점 이상	457점 -597점	64점 -44점	470점-529점 /52점-70점	550점 -695점	241점 -339점	8	외국어 능력 시험 점수로 평가 (정량지표)
	중국어	영어																																																	
신HSK	외국어대 어학검정 (FLEX)	G-TELP (LEVEL 2)	TOEFL PBT/IBT	TOEIC	TEPS (*18.5.12. 이후)	점수																																													
5급 210점 이상	800점 이상	88점 이상	590점 이상 / 97점 이상	870점 이상	452점 이상	20																																													
5급 180점 이상	700점 -799점	87점 -77점	567점-588점/ 86점-96점	790점 -865점	385점 -451점	16																																													
4급 210점 이상	598점 -699점	76점 -65점	530점-566점/ 71점-85점	700점 -785점	340점 -384점	12																																													
4급 180점 이상	457점 -597점	64점 -44점	470점-529점 /52점-70점	550점 -695점	241점 -339점	8																																													
	해외근무 경력	10점	○ 경력인정 기간 중 해외 근무이력 1년 이상						현지어 역량, 현지 제도 이해도 및 문서 감식 등 직무 전문성 (정량지표)																																										
	직무분야 학위	10점	○ 직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석·박사 학위 구분 없이 단일 점수 부여							직무의 전문성 (정량지표)																																									
가산 요건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 취업지원 대상자(선발예정 인원의 30% 이내) ○ 의사상자 등(선발예정 인원의 10% 이내)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또는 3%																																																
합계		110점							배점+가산																																										

붙임 4 체력검사의 평가 기준과 방법

○ 체력검사 평가 기준표 (5개 항목 100점 만점)

구 분		20점	18점	16점	14점	10점	6점	3점	1점
남자	20미터 왕복 오래 달리기(회)	62 이상	57~61	52~56	47~51	41~46	35~40	30~34	29 이하
	상대악력(%)	62.6 이상	59.9~ 62.5	57.2~ 59.8	54.5~ 57.1	51.8~ 54.4	47.2~ 51.7	42.6~ 47.1	42.5 이하
	교차 윗몸 일으키기(회/1분)	55 이상	52~54	48~51	45~47	42~44	37~41	32~36	31 이하
	제자리멀리뛰기 (cm)	229 이상	221 ~228	213 ~220	205 ~212	196 ~204	186 ~195	176 ~185	175 이하
	10미터 4회 왕복달리기(초)	9.9 이하	10.0~ 10.4	10.5~ 10.9	11.0~ 11.4	11.5~ 12.0	12.1~ 12.6	12.7~ 13.2	13.3 이상
여자	20미터 왕복 오래 달리기(회)	30 이상	28~29	25~27	22~24	19~21	15~18	11~14	10 이하
	상대악력(%)	46.8 이상	44.6~ 46.7	42.4~ 44.5	40.2~ 42.3	38.0~ 40.1	34.0~ 37.9	30.0~ 33.9	29.9 이하
	교차 윗몸 일으키기(회/1분)	36 이상	33~35	30~32	27~29	23~26	18~22	13~17	12 이하
	제자리멀리뛰기 (cm)	162 이상	156 ~161	149 ~155	142 ~148	135 ~141	127 ~134	119 ~126	118 이하
	10미터 4회 왕복달리기(초)	12.3 이하	12.4~ 12.7	12.8~ 13.2	13.3~ 13.7	13.8~ 14.3	14.4~ 15.0	15.1~ 15.7	15.8 이상

비고

1. 한 종목 이상에서 실격·기권 등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2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3. 당일 체력 검사를 위한 체성분 및 혈압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저혈압(100mmHg 이상) 또는 최고혈압(160mmHg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면 실기시험 응시가 제외될 수 있음
4. 당일 평가 진행 순서는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평가방법 (변경사항 등) 및 유의사항은 체력검사 당일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함

「출입국관리직 무도 분야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20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참고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 ▶ www.kada-ad.or.kr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 기타, 직업 : 기타
- ▶ www.kimsonline.co.kr
- ▶ www.druginfo.co.kr

참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판정기준

약물군	약물 성분	판정기준	단위
동화작용제	drostanolone	검출 시	
	methenolone	검출 시	
	methasterone	검출 시	
	testosterone	검출 시	비고참조
	1-testosterone	검출 시	
	clenbuterol	검출 시	
	stanozolol	검출 시	
이뇨제	hydrochlorothiazide	검출 시	
	chlorothiazide	검출 시	
	furosemide	검출 시	
흥분제	methylhexanamine	검출 시	
	methylephedrine	> 10	μg/ml
	ephedrine	> 10	μg/ml
마약류	Buprenorphine	검출 시	
	dextromoramide	검출 시	
	diamorphine(heroin)	검출 시	
	fentanyl	검출 시	
	hydromorphone	검출 시	
	methadone	검출 시	
	morphine	검출 시	
	oxycodone	검출 시	
	oxymorphone	검출 시	
	pentazocine	검출 시	
	pethidine	검출 시	

※ 비고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은 신체발육 및 필수대사에 필요한 호르몬으로서 인체 내에서 일정량이 생성(내인성)되며, 인체에서 대사되어 에피테스토스테론(Epitestosterone)으로 변화하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테스토스테론과 에피테스토스테론의 비율(T/E ratio)은 1:1임. T/E ratio가 4:1 초과시에는 외부로부터 외인성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투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II.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

- 도핑검사와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 계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무분야								
경찰 공무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군 인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외무공무원		외무 9등급	외무 6~8등급	외무 5등급	외무 4등급	외무 3등급	외무 2등급	외무 1등급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 대학 포함)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초· 중· 고등 학교 교원, 그 밖의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5호봉 이 상	2호봉 이 상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		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6년	3년	3년	3년